

안양시 훈령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정

제정 2018. 4. 4 훈령 제68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 훈령 중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의 개정) 안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가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안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안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안양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의 개정) 안양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기”를 “규정”으로 한다.

제5조(「안양시 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의 개정) 안양시 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안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의 개정) 안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안양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및운영관리규정」의 개정) 안양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및운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안양시 훈령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정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

▣ 안양시 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단원평정표(제20조 관련)

확인자: 시립예술단장 (인)

작성자: 업무담당과장 (인)

성명	직위	분야	근무평정(20점)			실기평정(80점)			총점	비고
			출결 (10점)	성실성 (10점)	소계	실기 (70점)	연습도 (10점)	소계		

1. 연주단원 근무평정표

확인자: 업무담당과장 (인) 평정자: 지휘자 (인)

성명	직위	분야	근무상황(10점)							성실성(10점)				총계	비고	
			1월			~	12월			소계	조직 생활 (5)	규정 준수 (3)	기여도 (2)			소계
			결근	지각 조퇴	이석		결근	지각 조퇴	이석							

※ 결근: -1.5(무단 결근: -2), 지각, 조퇴: -0.5(1시간 이상 지각: -1), 무단이석: -1

※ 기여도: 근무 1년당 0.25점 + 예술발전 기여 등

2. 연주단원 실기평정표

확인자: 업무담당과장 (인) 평정자: 지휘자 (인)

성명	직위	분야	실기도 (70점)	연습도(10점)			총계	비고
				공연 (5점)	연습 (5점)	소계		

3. 비연주단원 근무평정표

확인자: 업무담당과장 (인) 평정자: 지휘자 (인)

성명	직위	분야	근무상황(20점)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80점)							총계	비고	
			1월			~	12월			소계	업무 실적 (20)	창의력 노력도 (20)	직무 태도 (20)	규정 준수 (13)	정보화 능력 (15)	기여도 (2)			소계
			결근	지각 조퇴	이석		결근	지각 조퇴	이석										

※ 결근: -1.5(무단 결근: -2), 지각, 조퇴: -0.5(1시간 이상 지각: -1), 무단이석: -1

※ 기여도: 근무 1년당 0.25점 + 예술발전 기여 등

